

GMO 완전표시제 시행에 따른 수입신고 구비서류 등 안내문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앞서 간장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에 추가되었음을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추가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행정예고('26.8.5)에 따라 당류 및 식용유지류도 간장과 동일한 '26.12.31. 시행코자 관련 규정의 개정이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수입신고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차 안내해 드리니 표시 및 제출서류 등 사전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GMO 완전표시제

- (현행) 국내 승인 GMO 농산물*(6품목)을 사용하여 제조·가공 후 GMO 성분이 남아 있는 식품에만 표시

* GMO 표시대상 승인 농산물: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 (변경 사항) GMO 원재료를 사용했다면 최종제품에 GMO 성분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임을 표시(시행: '26.12.31.)

현행		GMO 완전표시제
제조·가공 후에도 GMO 성분이 남아 있는 식품만 표시	⇒	GMO 성분이 남아 있지 않아도 예외 없이 표시

→ (완전표시 대상 품목) 간장, 당류(옥수수 등), 식용유지류(대두유, 옥수수유, 카놀라유 등)

<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 식품유형* >

구분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
식품 유형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 분해간장, 혼합간장, 혼합장, 기타 장류	설탕류(설탕, 기타설탕), 당시럽류, 올리고당류(올리고당, 올리고당 가공품), 포도당, 과당류(과당, 기타과당), 엿류(물엿, 기타엿, 텍스트린), 당류가공품	식물성유지류(대두유, 옥배유, 카놀라유, 면실유 등), 동물성유지류(식용우자돈지 등), 식용유지가공품(혼합식용유, 향미유, 쇼트닝, 마가린 등)

※ 식품용으로 승인된 GMO 원재료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

□ GMO 표시방법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는 용기·포장 등의 바탕색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색상으로, 12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선명하게 표시
- **(주표시면)**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 ○○포함 식품” 또는, **(정보표시면)** 해당 원재료명 바로 옆에 “유전자변형”, “유전자변형된 ○○”, “유전자변형 ○○ 포함”으로 표시하여야 함
- * 일반적인 표시 사항은 10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

□ GMO 표시면제 서류

- GMO 표시대상 원재료를 사용한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는 해당 제품이 구분 관리되었다는 증명서*와 함께, 제품에 사용된 GMO 표시대상 원재료의 시험검사성적서** 제출
- * 최종제품: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중 택 1 (원본)
- ** 사용원재료: 시험검사성적서 (사본,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기관이 아니어도 가능)
- ※ 최종 제품에 대한 국내외 시험검사성적서는 GMO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할 수 없어 인정 어려움

< GMO 표시면제를 위한 입증서류 비교 >

現 GMO 표시제 (유전자변형DNA(또는 단백질) 남아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함)	GMO 완전표시제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	
	제출서류	추가 (유전자변형 DNA(또는 단백질) 남아 있는 원료에 대한 입증)
① 구분유통증명서(제조회사 증명서 포함) 원본	현행 ※ 다만, 최종 제품에 대한 국내외 시험검사 성적서는 유전자변형 식품등 표시 대상이 아님을 입증할 수 없어 인정 어려움	+ 사용 원재료에 대한 시험검사성적서 * (사본) ※ '사용 원재료에 대한 시험 검사성적서' 발행기관은 식약처 지정 기관이 아니어도 가능
② 정부증명서(공증자가증명서 포함) 원본		
③ 국내외 시험·검사성적서 원본 (「식품의약품검사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식약처지정 기관)		